

#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(이정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19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5월 20일  
발 의 자 : 이정인, 권수정, 김제리,  
김화숙, 박기재, 양민규,  
오현정, 이병도, 이호대,  
홍성룡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자해·공격 등 도전적 행동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제1항제10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9의2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 <p><u>10.</u> (생   략)</p> <p>② (생   략)</p>	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</u></p> <p>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